##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969

발의년월일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:이영실, 김경영, 권수정, 경만선,

김혜련, 권순선, 박기재, 최 선,

김경우, 이태성, 이호대 의원

(11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최근 1인 가구,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가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서울의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남.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 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반려동물 등록대상의 월령을 「동물보호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'2 개월 이상인 개'로 규정함. (안 제2조제2호)
- 나.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임시보호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0조)
- 다.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 유기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의 안락사 감소를 위해 구조, 포획, 방사 등의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1조제2항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동물보호법」,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월령(月齡) 3개월 이상인 개"을 "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법 제15조제6항"을 "법 제15조제7항"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3항과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.
-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 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. 다만,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 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동물 중 길고 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등록대상동물"이란 법 제2	2
조제2호에 따라 주택·준주택	
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	
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	
기르는 월령(月齡) 3개월 이상	월령(月齡) 2개월 이상
<u>인 개</u> 를 말한다.	인 개
2의2. ~ 9. (생 략)	2의2. ~ 9. (현행과 같음)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생	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	② 법
<u>제15조제6항</u> 에 해당하는 사항	제15조제7항
이 발견된 경우, 동물보호센터	
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	
제10조(동물의 구조・보호)	제10조(동물의 구조·보호)
① • ② (생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
	<u>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</u>
	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
	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또는 구청
	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

<신 설>

제21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제21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 ② -----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.

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 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 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 야 하며,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 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 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 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.

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|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.

--- 길고양이 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 | 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 에 방사해야 한다. 다만, 길고양

	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
	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
	여 방사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
	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
	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
	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
	방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
	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.